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11호 2014. 10.02 (목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4-71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73차) 2
- 하동군 고시 제2014-72호 201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4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4-611호 의약분업 예외지역(준용) 지정 취소지역 공고 5
- 하동군 공고 제2014-612호 대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열람 공고 6
- 하동군 공고 제2014-613호 하동군 신조공인 공고 .. 8
- 하동군 공고 제2014-619호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 9
- 하동군 공고 제2014-622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2

회 람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감사실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 고시 제2014-71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73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9. 23.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남양안길 18-13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9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3) 제 411 호

도로명주소 고시내역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하동군진교면 고룡리559	경상남도하동군진교면 남양안길18-13	20140923	20070618	남양이라는 자연마을명에 지역특성을 합성하여 남양안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하동군악양면 신흥리726-2	경상남도하동군악양면 악양서로410-22	20140923	20070618	도시시점이악양중심으로부터서쪽에위치 하는 방향성 부여	
건물번호 변경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 동교리길18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 하동공원길88	20140923	20070618	하동공원이 위치하는 길임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하동군옥종면 병천리508-3	경상남도하동군옥종면 옥단로992	20140923	20070702	하동군옥종면과신청군단성면의첫글자를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하동군양보면 지례리신37-2	경상남도하동군양보면 기락길68	20140923	20080402	기락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하동군청암면 상이리392-9	경상남도하동군청암면 청학로1395-8	20140923	20090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가 청 학동으로 가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하동군옥종면 청룡리150	경상남도하동군옥종면 옥수로3-24	20140923	20090702	하동군옥종면과진주시수곡면을있는도로 로 "옥종"과 "수곡"의 첫자를 혼용 하여 도로명으로 사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하동군악양면 미점리522-3	경상남도하동군악양면 섬진강대로3046-25	20140923	20090710	19번국도의일부로서, 섬진강을따라형성 된도로로 지역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 흥룡리941	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 섬진강대로2732-3	20140923	20090710	19번국도의일부로서, 섬진강을따라형성 된도로로 지역명 반영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 공시

- 공시기준일 : 2014년 6월 1일
- 공시대상 : 하동읍 읍내리 109-10번지 외 225호
- 공시사항 : 개별주택가격(주택과 부속토지의 총액)
- 공시방법 :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군홈페이지 게재

2. 이의신청

- 제출기간 : 2014년 9월 30일 ~ 10월 29일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 제출방법
 - 서 면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팩스우편 접수 가능
 - 인터넷 : 군 홈페이지(토지건축정보 → 개별주택가격 → 이의신청)에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3. 이의신청 제출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우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55)880-2299)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3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14 - 611

공 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3호(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약분업예외(준용)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취소합니다.

2014. 9. 26.

하 동 군 수

1. 의약분업예외지역(준용) 지정취소 지역 : 금남면
2. 의약분업 예외지역(준용) 지정취소에 따른 예고(공고)
- 예고(공고)기간 : 2014. 9. 26. ~ 2014. 12. 25.(90일간)
3. 지정취소 일자 : 2014. 12. 25.
4. 하동군 의약분업예외(준용)지역 현황

현 행 (9개면)	변 경 (8개면)
하동읍, 악양면, 적량면, 고전면, 금성면, 금남면, 양보면, 북천면, 청암면	하동읍, 악양면, 적량면, 고전면, 금성면, 양보면, 북천면, 청암면

※ 지정취소사유 : 하동군 금남면 제면당길 96 소재지에 약국 개설
- 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실거리로 1.5km 이내

하 동 군 공 보

(6) 제 411 호

하동군 공고 제2014 - 612호

대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열람 공고

대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관련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3조 및제15까지 규정에 의하여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9. 26

하 동 군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대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기본계획
- 계획수립권자 : 하동군
- 승인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계획내용 : 농업용수 공급시설

구 분	내 용	비 고
수해면적	70.3ha	
양수장	1개소 신설	양수량 : Q=0.30 m ³ /s, 190kw× 300mm×2대
송수관로	1조	D500mm - L=2,179m, D300mm - L=2,360m
도수로	1개소 m ²	0.80x0.80m, 1조 680m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4. 9. 26부터 20일간 (공휴일제외)

나. 공람장소

- 하동군 건설교통과, 금남면사무소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3. 설명회 개최

가. 일시 : 2014. 10. 7 (화) 14:00

나. 장소 : 금남면 사무소

4. 의견 제출방법

가. 제출기한 : 2014. 9 26 ~ 2014. 10. 25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따른 서면제출 및 환경영
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에 온라인제출

다. 제출내용 : 해당 계획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과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개최 요
구 등에 대한 의견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건설교통과 (담당 : 최규원 ☎055-880-2514)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하 동 군 공 보

(8) 제 411 호

하동군 공고 제2014 - 호

공 고

하동군공인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공인 신조등록을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인 사용일 : 2014. 10. 2

2. 신조개각사유

: 하동군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자금출납공무원 직인등록

(하동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4조에 의거 부서업무이관)

3. 신조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비고
			신조	폐기	
신조 공인	하동군발전소주변 지역특별회계자금 출납공무원인	한글전서체 2.0cm 정사각형			

4. 신조공인 사용일 : 2014. 10. 2(공고 후)

2014년 10월 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14 - 619호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하 동 군 수

1. 공 고 명 : 하동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대상지 열람공고
 2. 지정사유 : 토석류(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지
 3. 대 상 지 : 하동군 옥종면 종화리 산69-2외 14필지(붙임 필지별 내역 참조)
 4. 공고내용 : 하동군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에 따른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5. 공고기간 : 2014. 10. 1. ~ 2014. 10. 30.
 6. 이의신청 : 공고기간내
 - 가. 접 수 처 : 경상남도 하동군 산림녹지과 산림토목담당(055-880-2483)
 - 나.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
 7. 지정예정일 : 2014. 11. 10.
 8.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가.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나.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9.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산림녹지과 산림토목담당(055-880-248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끝.

하 동 군 공 보

(10) 제 411 호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신설 2012.10.2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사진(컬러)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주소	전화번호	
	직업(소속)	전자우편주소	

신청 이유			
지정 예정지	소재지		
	면적	m ²	
이의신청 면적	m ²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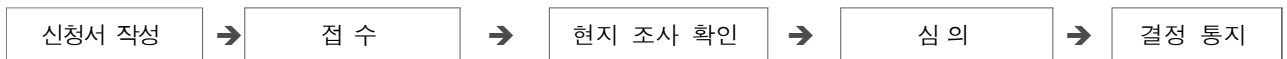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 리 기 관: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하 동 군 공 보

(11) 제 411 호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지 정 면 적 (㎡)	소유자		비 고
	군	읍 · 면	리					성명	주소	
계				19필지		453,334	453,334			
1	하동	옥종	종화	산69-2	임	1,784	1,784	최**	창원시 대원동 121 더시티세븐자이 104-3107	
2	하동	옥종	궁항	산 141-1	임	71,461	71,461	권**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205-8	
3	하동	북천	서황	산224	임	9,620	9,620	황**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50 상도동태미안 1차아파트 105동 203호	
4	하동	양보	장암	산 213-3	임	81,957	81,957	정**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1024(영일정씨도 암공파귀후재중회)	
5	하동	북천	직전	산45	임	52,860	52,860	이**	하동군 북천면 모성길 52-1	
6	하동	옥종	궁항	산81	임	20,183	20,183	김**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01-17	
7	하동	옥종	궁항	산28-1	임	20,529	20,529	한**	대구시 서구 비산동 932-2	
8	하동	진교	안심	산 36-2	임	39,853	39,853	차**	전남 여수시 광무동 928-14 럭키광무아 파트 5-805	
9	하동	양보	통정	산62-1	임	13,190	13,190	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1 한솔마 을 202동 1004호	
10	하동	양보	감당	산 263-10	임	3,158	3,158	하**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106	
11	하동	양보	지례	산72-1	임	24,793	24,793	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94 정릉중앙 하이츠빌 1단지아파트 106-1003	
12	하동	옥종	병천	산51	임	7,140	7,140	정**	부산 동래구 칠산동 4 정화리치빌라 비동 302호	
13	하동	옥종	안계	산95-1	임	54,183	54,183	하 *****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42	
14	하동	옥종	청룡	산14-2	임	12,954	12,954	권**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36	
15	하동	옥종	두양	산84-2	임	39,669	39,669	하동군		

하 동 군 공 보

(12) 제 411 호

하동군 공고 제2014 -622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0월 1일

하 동 군 수

1. 개정이유

가.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 일부개정 (2014. 9. 2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 정상참작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을 추가 명시함(안 제2조, 안 제7조)
- 나. 수사기관 결정 통보과 관계없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2조의2)
- 다.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의 경우에도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함(안 제4조)
- 라. 기능직 폐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수 [참조 : 행정과장,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우편번호 667-8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055-880-2153, 팩스번호 055-880-2159,

E-mail borisu656@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하동군 홈페이지(www.hadong.go.kr) 「뉴스/공고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공적”을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내부종결 처리”를 “내부종결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별표 1 적용”을 각각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를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 비위”로 하고, “성희롱에”를 “성희롱,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에”로 하고, 제2호 중 “지도사와 기능직 공무원은”을 “지도사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관련도와”를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2, 제4조제1항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하 동 군 공 보

(14) 제 411 호

신구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u>공적</u>, <u>니우치</u>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 별표1의2의 음주 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1의3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p>	<p>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 ----- ----- ----- <u>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u>, ----- ----- ----- -----.</p>
<p>제2조의2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u>내부종결 처리</u></p> <p>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u>별표 1적용</u></p> <p>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u>별표1 적용</u></p>	<p>제2조의2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1. ----- <u>내부종결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u></p> <p>2. ----- ----- ----- <u>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u></p> <p>3. ----- ----- <u>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u></p>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표준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우수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 별표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1의3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원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2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 별표1부터 별표4까지 적용**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1 부터 별표4까지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별표1부터 별표4까지 적용**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4조 (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하 동 군 공 보

(18) 제 411 호

제6조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7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4와 별표1의2를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2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누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제9조 (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부 칙 <2014. 9.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2, 제4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성매매 라. 음주운전 마.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비고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하 동 군 공 보

(20) 제 411 호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중징계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

※ 비고

-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 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계)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중요사항	1	2	3	4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계)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과 면	해 임
해 임	강 등
강 등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불문(경고)

하 동 군 공 보

(22) 제 411 호

[별표 4]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뢰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300만원 이상	중징계					

관계법령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4.1.18.규387, 2005.10.6.규962, 개정 2011.6.16.규1061>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개정 2011.6.16.규1061>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한다. <개정 2009.6.30.규1020, 개정 2011.6.16.규1061, 단서삭제 2011.6.16.규1061, 개정 2012.3.22.규1072, 개정 2013.4.10.규1086>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음주운전사건 비위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개정 1988.4.7.규492, 개정 2009.6.30.규1020, 개정 2011.6.16.규1061, 개정 2011.11.10.규106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6.30.규1020, 개정 2011.6.16.규1061>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설 1994.7.30.규761>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지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개정 2013.4.10.규1086>

하 동 군 공 보

(24) 제 411 호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6.30.규1020, 개정 2011.6.16.규1061, 개정 2013.4.10.규1086>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 별표 1 적용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한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전조개정 1994.7.30.규761, 개정 2011.6.16.규1061, 개정 2013.4.10.규108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6.16.규1061, 개정 2013.4.10.규1086>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 <개정 2011.6.16.규1061>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 등 사건 <개정 2011.6.16.규1061>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이나 경고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인 시효가 5년인 비위, 음주운전사건 비위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1988.4.7.규492, 개정 2005.10.6.규962, 개정 2009.6.30.규1020, 개정 2011.11.10.규1065, 개정 2013.4.10.규1086, 개정 2014.6.27.규1107>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개정 2005.10.6.규962>
2.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

(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광역시장, 도지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개정 1986.9.2.규471, 개정 2005.10.6.규962, 개정 2013.4.10.규1086>

3.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6917호)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개정 1984.1.18.규387, 개정 2005.10.6.규962, 규1086>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개정 1981.10.27.규308>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정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1983.12.8.규379, 개정 2013.4.10.규1086>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 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전조개정 1981.10.27.규308, 개정 2005.10.6.규962, 개정 2013.4.10.규1086>

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서(이하 “징계 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6.규1061, 개정 2013.4.10.규1086>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 한다. <본조신설 1981.10.27.규308, 개정 2011.6.16.규1061>

제7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개정 2011.6.16.규1061>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의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동조 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음주운전

하 동 군 공 보

(26) 제 411 호

관련 사건과 청렴의무 위반사항은 별표 1의2와 별표 4를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5.10.6.규962, 개정 2011.6.16.규1061, 단서신설 2011.6.16.규1061, 개정 2012.3.22.규1072, 개정 2013.4.10.규1086>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조개정 1988.4.7.규492, 개정 2009.6.30.규1020, 개정 2011.6.16.규1061, 개정 2013.4.10.규1086>

③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4.7.30.규761, 개정 2011.6.16.규1061, 개정 2013.4.10.규1086>

제8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1983.12.8.규379>

부 칙 <개정 2014.6.27.규11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성폭력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4.6.27>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성매매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교 : 1.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2.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7.규1085>

하 동 군 공 보

(28) 제 411 호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중계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 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 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

※ 비고

-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계)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중요사항	1	2	3	4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하 동 군 공 보

(30) 제 411 호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계)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과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별표 4][별표 4]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7조 관련)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300만원 이상	중징계					